

서울特別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

□이 안건은

○ 실·국별 책임경영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국·본부 내의 전보권 등을 보조기관에 위임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소방시설관련사무를 소방서장에게 각각 신규위임하며, 기존 위임 사무를 전면 검토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5급 이하 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1개월 이내 교육과견명령, 호봉승급권한을 「3급 이상이 長인 보조기관의 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및 관련 조치명령 등 6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며,
- 소방시설 공사업·설계업·감리업 관련 10개 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등 총 17개 사무를 신규위임하며,
- 법령개정으로 기존위임사무 중 사무폐지 등이 된 23개 사무를 삭제하고,
- 중앙사무가 법령개정으로 시 사무로 된 58개 사무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 규정하며,
-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등 기존 위임사무를 전면 보완·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검토의견

□개요

○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청장 등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무는 1998년 12월말 현재 총 404개 사무이나 실·국별 책임경영체의 효율적 운영과 법률개정에 따른 기존위임사무의 전면검토 보완정비 등을 위하여 신규위임 17개, 삭제 23개,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사무 58개, 법률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변경 31개,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무 1개, 기타 32개 등 162개 사무개정으로 위임 사무는 84개가 증가된 488개 사무임.

□주요내용

○신규위임 17개 사무는

- 본청 실·국·본부단위 조직내의 5급이하 직원전보, 1개월 이내의 교육과견명령, 호봉승급권을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배출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명령 등 6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 소방시설공사업면허 등 10개 사무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법령개정 등으로 삭제하는 위임사무는 23개로서

- 구청장을 제외한 자치구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등 11개 사무는 자치구 사무로 변경
- 행정구역명칭변경증명 등 5개 사무는 폐지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선임 및 해임신고수리 업무는 중앙부처로 환수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등 5개 사무는 자동차관리사업 위임사무에 포함
- 건설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사무는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위임사무와 중복되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한 사무는

- 산단단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 58개 사무로서 국가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한 것이고
- ※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시에는 규칙으로 정하고 시·도 고유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는 조례로 정함.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무는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등 31개로서 기존 위임사무로서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 기타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무 1건과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등 32개는 위임사무의 내용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신규위임사무(17개)는 실·국별 책임경영